



리밍광(李明光) 등 상업비밀침해죄 사건

14

01 서지 사항

| | | | |
|------------------|--|-------|--------------------------|
| 국가 법원 | 중국 광둥성 심천시 중급인민법원 | 사건번호 | (2004) 深中法刑二终 字 第258号 |
| 판결 일자 | 2004년 9월 10일 | 판결 결과 | 상소 기각(상업비밀침해죄 인정, 권리자 승) |
| 공소기관 | 광둥성 심천시 나호구 인민검찰원(广东省深圳市罗湖区人民检察院) | | |
| 피고인(상소인) | 1. 리밍광, 2. 쉬시아오칭, 3. 공민 | | |
| 참조 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19조, 형사소송법 제189조 | | |
| 영업비밀 | 프린트기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 | |
| 키워드 (Keyword) | 상업비밀(商业秘密), 기술자료(技术资料), 상업비밀침해죄(侵犯商业秘密罪), 공모자(同谋者) | | |

02 사건 개요

피해자 심천시 룬티엔즈 도형기술유한공사는 프린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다. 2001년 10월, 룬티엔즈 공사는 '룬티엔즈 초광대역 컬러프린트시스템 V1.0'을 개발하고, 심천시 정보화 사무실로부터 소프트웨어 제품 등록증서까지 발급받았다.

리밍광은 요녕커바오 과학기술 실업발전유한공사의 사장으로, 룬티엔즈 공사의 프린터와 유사한 프린터기를 개발,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쉬시아오칭과 공민을 접촉하고, 이들이 룬티엔즈 공사의 기술자료를 가지고 커바오 공사로 와서 '한터' 3200 디지털 컬러 프린터기를 생산하였다. 이에, 룬티엔즈 공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1심에서 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었다.

03 주요 쟁점

| 공소기관 | ⇒ | ⇐ | 피고인(상소인) |
|---|---|---|--|
| 피고인들이 중국 법률을 무시하고, 룬티엔즈사의 영업비밀을 절취, 사용하여 룬티엔즈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행위는 영업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 | | 深研鉴(2003)02号、深研鉴(2004)02号 《기술비밀감정의견서》는 진실성, 과학성, 합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는 무효이다. 심천시 중형신 자산평가유한공사의 深衡评(2004)005号 《자산평가보고서》는 룬티엔즈 공사의 손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04 판결 요지

원심이 영업비밀 침해죄 인정의 근거로 삼은, 深研鉴(2003)02号、深研鉴(2004)02号 《기술비밀감정의견서》는 진실성, 과학성, 합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심천시 중형신 자산평가유한공사의 深衡评(2004)005号 《자산평가보고서》는 룬티엔즈 공사의 손실을 증명하는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 근거는 충분하고, 피고인들의 상소이유는 이유 없다.

세 피고인은 룬티엔즈사의 영업비밀을 도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이러한 영업비밀침해 행위는 룬티엔즈사에 실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한 법률은 정확하고, 성질이 정확하며, 형량 또한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죄에 해당한다.

05 Key Point

한국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침해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반해, 중국은 영업비밀침해죄 형사처벌 규정이 형법 제219조에 들어있다. 중국에서 특허침해죄의 경우 형사처벌의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인데 반해, 영업비밀 침해죄의 경우 한국의 영업비밀 침해죄에 상응하는 정도 이므로, 기술비밀 이나 노하우 등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형법 제219조의 영업비밀침해죄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제적 경제손실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영업비밀의 사용허가 비용(라이선스 실시료)을 경제적 손실액으로 보았다.